

# 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

## (역구매론 구매기업용)

주식회사 하나은행 앞

귀 행과 20 년 월 일 체결한 “여신거래약정서” 에 따라 약정한 동 대출금의 여신한도기한 종료일 전까지 은행 또는 채무자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판매기업과 은행이 정한 기한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연장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동연장처리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위 약정에 의한 대출이 대출기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
- 채무자에 대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(관련인정보 포함),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그 관련인정보와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
- 판매기업과의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

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(기업용)가 본 약정서의 사본을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.

20 년 월 일

채무자: \_\_\_\_\_ (인)

주소:

